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 강대호 의원 외 11명
- 나. 의안번호 : 제2101호
- 다. 발의일자 : 2021. 01.04
- 라. 회부일자 : 2021. 01.21

### 2. 제 안 사 유

- 원인자부담금은 업종별로 ‘급수관 인입구경’에 따라 산정하여 수요자(건축 행위자)에게 선납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음.
- 그러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등에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주체는 건축행위자가 아닌 택지조성자라는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인 ‘급수관 인입구경’은 건축물의 준공시점에 산정됨에 따라 건축행위자에게 부과할 수 밖에 없는 바, 원인자부담금을 택지조성 단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환산연면적’으로 변경하고자 함.

### **3. 주 요 내 용**

가. 원인자부담금을 업종별 환산연면적에 따라 산정함(안 제4조제1항 및 별표).

### **4. 참 고 사 항**

가. 관련 법령 : 「수도법」

나. 예산 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5. 검토 의견

### 가. 개요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주체를 건축행위자가 아닌 택지조성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현행 산정기준인 '급수관 인입구경'을 '환산연면적'으로 변경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수도법」 제71조와 현행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서울시 수도시설 공사 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현재 원인자부담금은 인입급수관<sup>1)</sup> 구경에 따라 산정하여 해당 금액을 '건축행위자'에게 선납으로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지만, 최근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등에서 건축행위자가 대규모 택지 및

1) 인입급수관의 범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나 서울토지주택공사(SH공사)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은 경우 건축물을 시공한 업체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sup>2)</sup>이 이어지고 있음.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 부과처분취소(판결문 일부)

“ 수도법 제 71 조 제 1 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 사업지구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주택단지를 설치한 자’로서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이미 비용 발생의 원인이 제공된 후에 예정된 범위 내에서 아파트 및 상가를 건축한 甲 회사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甲 회사에 대하여 부과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에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그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건축물이 원래 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 등 소유자는 따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 의해 주택단지가 조성된 경우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은 주택단지를 설치한 택지개발사업 시행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 이미 비용 발생의 원인이 제공된 후에 택지를 분양받아 그 예정된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행위에 의해 비로소 그 원인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2) 당진('20..7.9), 대구('20..7.29), 강릉('20..7.29) 대법원 패소

- 서울시의 경우도 동일 건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다른 지자체 대법원 판결 결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 대상 건에 대해서는 반환금 지급을 진행<sup>3)</sup> 하거나 계획하고 있음.
- 따라서 앞서 언급한 여건 등을 반영하여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내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sup>4)</sup>할 수 있도록 현행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인 ‘급수관 인입구경’을 ‘환산 연면적’<sup>5)</sup>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임.
- 한편, 2021년 1월말 기준 서울시에 제기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취소 소송 금액은 38억 2천6백만원(55단지)에 불과하지만, 서울시가 반환해 줘야 하는 원인자부담금 규모는 202억 6천9백만원<sup>6)</sup>에 달함에 따라 예산 운용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건축행위자에게 원인자부담금 반환한 이후 해당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서 다시 징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대상 및 소송 현황(2015년 9월 이후)>**

(단위: 건, 백만원)

연도	계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상		소송		대상		소송		대상		소송	
	단지	금액	단지	금액	단지	금액	단지	금액	단지	금액	단지	금액
계	569	20,269	55	3,826	558	19,229	54	3,778	11	1,040	1	48
2015	8	372	8	372	8	372	8	372	-	-	-	-
2016	170	6,468	11	655	165	5,630	10	607	5	838	1	48
2017	132	6,053	9	979	129	5,956	9	979	3	97	-	-
2018	110	2,818	8	429	109	2,770	8	429	1	48	-	-
2019	113	3,728	15	1,298	111	3,671	15	1,298	2	57	-	-
2020	36	830	4	93	36	830	4	93	-	-	-	-

3) 법원의 강제조정결정 등으로 반환 (2,416,612천원, 34개단지)

4)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의 경우에도 환산연면적으로 산출하나 기존과 같이 건축공사 준공단계에서 건축주에 부과

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가정용)과 「서울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4조(비가정용) 참조

6)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른 소멸시효(5년) 적용대상은 제외

※ 환산연면적 산출 근거

□ 가정용 환산연면적 산출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 주거용 건축물 급수관의 지름(제18조관련) >

가구 또는 세대수	1	2·3	4·5	6~8	9~16	17이상
급수관 지름의 최소기준 (밀리미터)	15	20	25	32	40	50

1. 가구 또는 세대의 구분이 불분명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주거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구수를 산정한다.

- 가. 바닥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1가구
- 나. 바닥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50제곱미터 이하 : 3가구
- 다.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초과 300제곱미터이하 : 5가구
- 라.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500제곱미터이하 : 16가구
- 마.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초과 : 17가구

□ 비가정용 환산연면적 산출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별표 4>

< 단위 건물바닥면적당 사용수량(제14조 관련) >

업종별	바닥면적 1평방미터당 1일평균 사용 수량(리터)	1일 평균 사용시간(시간)	비고
백화점	35.0	8.0	
영화관	30.0	5.0	
은행	30.0	7.0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30.0	7.0	
병원	50.0	5.3	
호텔·여관	50.0	5.0	
공서	25.0	7.0	
학교(초·중학교)	1인당 45.0	5.5	학생 1인당
학교(고등학교 이상)	1인당 80.0 교사1인당 100.0	6.0	학생 1인당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별표 3>

< 인입급수관 구경별 출수량표(제14조 관련) >

구 경 별	시간당 출수량(m <sup>3</sup> )
15 밀리미터	0.857
20 밀리미터	2.437
25 밀리미터	5.166
30 밀리미터	8.892
40 밀리미터	14.634
50 밀리미터	31.356
65 밀리미터	62.000
80 밀리미터	91.000
100 밀리미터	194.000
125 밀리미터	349.000
150 밀리미터	563.000
200 밀리미터	1,200.000
250 밀리미터	2,160.000
300 밀리미터	3,488.000